

2015년도 문화재위원회

제6차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5. 7. 1.(수), 14:00~20: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이현혜, 성성열, 최성락, 박보현,
강현숙, 김권구, 서동철, 한필원
(이상 8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안성 미산컨트리클럽 건설사업 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공개
2	아산 곡교천 강척·인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공개
3	경주마우나오션 관광단지 조성사업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공개
4	공주 수촌리 고분군 5차 시굴 및 발굴	공개
5	부여 석성산성 1차 발굴	공개
6	부여 부소산성(남문지, 부소산 사지) 발굴	공개
7	경주 황룡사 발굴 재심의	공개
8	고창 분청사기요지(사적 제250호) 발굴(시굴)	공개
9	강진 월남사지 정비사업부지 내 발굴	공개
10	강진 전라병영성 정비사업부지 내 발굴	공개
11	김해 유하 패총 발굴	공개
12	서울 종로 경희궁길 〇〇 일원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공개
13	국립서울농학교 수련관 증축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공개
14	양평 양수리 〇〇〇번지 일원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공개
15	파주 조리-법원 간 도로확포장공사구간 내 유적 보존방안 재심의	공개
16	용인 신갈동 〇〇〇번지 주유소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공개
17	영주 다목적댐 건설사업 구역(금광Ⅱ)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공개
18	경주 말방리 〇〇〇번지 외 1필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공개
19	울산미술관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공개
20	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울산 건설공사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공개
21	국립경주박물관 종합수장고 남측부지 건립관련 심의	공개
22	경주 교동 158-2번지 일원 월정교 주변 유적 발굴조사 관련 업무정지 처분 심의	공개

【검토사항】

1	발굴허가 관련 「상피제도」 운영 개선계획	공개
---	------------------------	----

【보고사항】

1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발굴조사 계획 보고	공개
2	보존조치 유적 재평가 소위원회 구성·운영 보고	공개
3	발견매장문화재 평가심의 소위원회 구성·운영 보고	공개
4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내 발굴허가 현황 보고	공개

I. 심의사항

안건번호 매장2015-06-01

1. 안성 미산 컨트리클럽 건설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가. 제안사항

(주)신미산개발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안성시 소재 「안성 미산컨트리클럽 건설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문화재보존대책 등 향후계획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명 : 안성 미산컨트리클럽 건설사업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산 28번지 일원
- 사업면적 : 1,190,004m²
- 사업내용 : 골프장 건설
- 시행자 : (주)신미산개발

(2) 조사내용

- 조사기관 : 세종대학교박물관
 - 조사단장 : ○○○(동관장)
 - 책임조사원 : ○○○(역사학과 교수)
- 조사면적 : 1,190,004m²
- 조사기간 : 2010. 3. 30.~2010. 9. 11.
- 조사결과
 - 유물산포지 6곳, 추정 건물지 1기, 추정 고인돌 5기, 고묘 3기가 확인
 - 유물산포지 1~3, 5, 6은 논·밭 경작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토기와 도기조각 등이 수습되었고, 지형과 수습된 유물로 보아 유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시굴조사 필요

- 유물산포지 4는 고묘와 같은 유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며, 추정 고인돌 1~5는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표본 시굴조사 필요
- 추정 건물지는 청해파문 암키와와 백자조각 등이 수습되어 조선시대 건물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굴조사 필요

◆ 조사대상지 내 문화재 세부현황

연번	유적명	행정구역(주소)	면적 (㎡)	시대	조사기관의견	자문회의 결과
1	유물산포지 1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산34임 일원	218,028	유물산포지	시굴조사	
2	유물산포지 2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885-3전 일원	19,259	유물산포지	시굴조사	
3	유물산포지 3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892-2답 일원	21,605	유물산포지	시굴조사	
4	유물산포지 4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907답 일원	19,767	유물산포지	표본조사	시굴조사
5	유물산포지 5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912답 일원	5,953	유물산포지	시굴조사	
6	유물산포지 6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920답 일원	7,038	유물산포지	시굴조사	
7	추정 건물지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산17임 일원	8,595	건물지	시굴조사	
8	추정 고인돌1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907답 일원	19,767	고인돌	표본조사	시굴조사
9	추정 고인돌2					
10	추정 고인돌3					
11	추정 고인돌4					
12	추정 고인돌5					
	계	유물산포지 전체면적 : 320,012㎡(시굴 280,478㎡ / 표본 39,534㎡)				

라. 학술자문회의(2015. 6. 25. / ○○○, ○○○)

- 해당부지내 원지형이 변형이 없고 지표조사결과 확인된 유물산포지 5개소는 유물 출토 상황과 지형 등을 고려할 때 모두 시굴조사 실시, 고묘 3기는 입회조사 필요
- 유물산포지 4와 추정 고인돌은 지형상 원지형이 잘 보존되어 조사수준을 시굴조사 전환 필요함

마. 검토의견

- 2010년도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와 2015. 6. 25.에 실시한 학술자문회의 의견이 다르므로 현지조사 후 보존조치 하겠음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학술자문회의(2015. 6. 25.) 결과 대로 조치
- 조건부가결 8명 / 출석 8명

2. 아산 곡교천 강청·인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가. 제안사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곡교천 강청·인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문화재보존대책 등 향후계획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명 : 아산 곡교천 강청·인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염치읍, 인주면, 선장면 일원
- 사업면적 : 2,193,260m²
- 사업내용 : 하천환경정비
- 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 조사내용

- 조사기관 : (재)경상문화재연구원
 - 조사단장 : ○○○(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원 부원장)
- 조사면적 : 2,193,260m²
- 조사기간 : 2015. 3. 31.~5. 29.
- 조사결과
 - 지표조사는 대상지역이 곡교천변의 충적대지인 점을 감안하여 현지 지표조사와 함께 고지형환경분석(한국고고환경연구소)을 실시함. 지표조사 결과, 신규 유물산포지 4개소가 확인됨
 - 신규 유물산포지 중 강청리 용애들 유물산포지, 해암리 배다리들 유물산포지, 대음리 원장들 유물산포지는 도기편과 자기편이 다수 확인되고, 고지형환경분석 결과, 미고지, 가지능선, 구릉말단부로 확인됨에 따라 시굴조사가 필요함
 - 채신언리 원장들 미고지는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고지형환경분석 결과, 미고지로

확인되며, 주변 지역보다 높게 형성된 안정된 지대로 경작행위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표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조사대상지 내 문화재 세부현황

연번	유적명	행정구역(주소)	면적 (㎡)	시대	조사기관의견	비고
1	강청리 용애들 유물산포지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강청리 113-2답 일원	52,393	삼국~조선	시굴조사	
2	해암리 배다리들 유물산포지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해암리 221-2묘 일원	5,336	삼국~조선	시굴조사	
3	대음리 원장들 유물산포지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114-4답 일원	54,037	삼국~조선	시굴조사	
4	채신언리 원장들 미고지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채신언리 19-446답 일원	17,396	미상	표본조사	
계		유물산포지 전체면적 : 129,162㎡(시굴 111,766㎡ / 표본 17,396㎡)				

라. 학술자문회의(2015. 5. 19.)

○ 참석자 : ○○○, ○○○

○ 회의결과

- 조사지역은 하천 주변에 형성된 자연제방, 미고지, 산록완사면 등으로 이루어진 지형으로서 고지형 분석결과 및 현지답사 결과와 거의 일치함
- 이러한 지형은 하천변 유적이 입지하기에 적합한 지형으로서 조사기관의 의견에 따라 시굴 및 표본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 검토의견

○ 조사단 및 학술자문회의 의견대로 조치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검토의견 대로 조치

○ 원안가결 8명 / 출석 8명

3. 경주마우나오션 관광단지 조성사업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가. 제안사항

(주)엠오디에서 추진하는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마우나오션 관광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사업부지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문화재 보존대책 등 향후계획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명 : 경주마우나오션 관광단지 조성사업
- 위치 : 경북 경주시 양남면 석촌리 산292-1번지 일원
- 사업면적 : 2,504,000m²
- 사업내용 : 관광단지
- 시행자 : (주)엠오디(MOD)

<참고사항: 경주마우나오션 관광단지 조성 계획(변경) 관련>

- (주)엠오디는 경주마우나오션 관광단지 조성계획 면적을 당초 3,919,270m²에서 지번 분할된 4,014m²를 제외, 이번 조사부지인 2,504,000m²를 추가하여 총 지정면적을 6,419,256m²으로 변경 추진 중

* 이번 조사부지외의 기존 지역은 1995년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2009년에는 (재)신라유산조사단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유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음

(2) 조사내용

- 조사기관 : (재)화랑문화재연구원
 - 조사단장 : ○○○(동 연구원 원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원 조사1과장)
- 조사기간 및 면적 : 2015. 4. 13. ~ 2015. 5. 13. / 2,504,000m²

(3) 조사결과 및 의견

- 경주마우나오션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예정부지는 넓은 조사범위에도 불구하고 해발 400~600m 사이의 급경사를 이루는 산지지형이고, 지표에는 다량의 암괴들이 노출되어 있어 유적의 존재가능성은 낮은 지역임
- 다만 조사지역 남쪽에(D구역 북편) 동-서로 뻗은 구릉은 완만한 능선부 평탄면을 따라 이장묘 4기가 열상 분포하고 탁월한 조망권을 갖춘 점을 고려할 때 고려~조선시대 분묘의 존재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따라서 해당 부지(29,146㎡)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전에 표본조사가 필요하며, 그 외 지역은 예정된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 조사대상지 내 문화재 세부현황

연번	유적명	행정구역(주소)	면적(㎡)	시대	조사기관의견	비고
1	경주마우나오션 관광단지에정부지 내 유적	경주시 양남면 석촌리 산292-1번지 일원	29,146	고려~조선	표본조사	
	계	(표본 29,146㎡)				

라. 학술자문회의(2015. 5. 12.)

- 참석자 : ○○○, ○○○
- 회의결과
 - 조사구역 내 'D' 지구에서 이장된 관묘 확인, 고려~조선시대의 분묘 존재 가능성
 - 이 평탄한 지역을 중심으로 표본조사 실시, 유물·유구의 존재 확인 필요
 - 나머지 조사구역은 유물·유구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시행 무방 판단

마. 검토의견

- 학술자문회의 의견대로 조치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 후 조치
- 조건부가결 8명 / 출석 8명

4. 공주 수촌리 고분군 5차 시굴 및 발굴

가. 제안사항

공주시에서 추진하는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수촌리 고분군(사적 제460호)」 시굴 및 발굴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5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공주 수촌리 고분군’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사적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시·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분포 범위 및 기초자료 확보 후 향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공주시장
- (2) 발굴 대상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223-2번지 일원
- (3) 발굴 대상면적 : 11,432m²(시굴 8,706m², 발굴 2,726m²)
-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89일
- (5) 발굴기관 :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조사단장 : ○○○(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원 팀장)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 후 조치
- 조건부가결 8명 / 출석 8명

5. 부여 석성산성 1차 발굴

가. 제안사항

부여군에서 추진하는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석성산성(사적 제89호)」 발굴 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5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부여 석성산성’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사적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시·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석성의 축조기법 및 기초자료 확보 후 향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부여군수
- (2) 발굴 대상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현내리 산104-1번지 일원
- (3) 발굴 대상면적 : 200㎡
-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25일
- (5) 발굴기관 : (재)백제고도문화재단
 - 조사단장 : ○○○(동 재단 원장)
 - 책임조사원 : ○○○(동 재단 책임연구원)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발굴조사 허가
- 원안가결 8명 / 출석 8명

6. 부여 부소산성(남문지, 부소산 사지) 발굴

가. 제안사항

부여군에서 추진하는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부소산성(사적 제5호)」 발굴 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5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부여 부소산성’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사적으로 지정된 남문지와 부소산사지 남쪽지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추가 기초자료 확보 후 향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부여군수
- (2) 발굴 대상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617번지 일원
- (3) 발굴 대상면적 : 1,595㎡
-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93일
- (5) 발굴기관 : (재)백제고도문화재단
 - 조사 단 장 : ○○○(동 재단 원장)
 - 책임조사원 : ○○○(동 재단 책임연구원)

라. 참고사항

- 부소산성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1980년~2002년까지 성벽, 문지 등에 대한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음. 금회 대상지역인 부소산사지(서복사지)와 남문지에 대해서는 1942년과 1980년, 1986년, 1987년에 각각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음

마. 의결사항

- 보류
 - 부소산성 종합정비계획 등 구체적 계획 수립 후 재검토
- 보류 8명 / 출석 8명

7. 경주 황룡사 발굴 재심의

가. 제안사항

경주에서 추진하는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황룡사(사적 제6호) 정비사업부지 내」 발굴 허가 신청사항을 보완하여 부의하오니 재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황룡사(사적 제6호) 광장조성부지 및 미 발굴지에 대해 발굴조사를 통해 신라 왕경 핵심유적에 대한 복원 ·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제4차 위원회에서 ‘보류’된 건으로 조사계획을 보완하여 재검토, 구체적이고 세밀한 조사계획을 수립토록 위원회에서 주문한 바 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주시장
 - (2) 발굴 대상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320-1번지 일원
 - (3) 발굴 대상면적 : 정밀발굴 31,166㎡
 -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382일
 - (5) 발굴기관 : (재)신라문화재연구원
 - 조사단장 : ○○○(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원 조사연구실장)
- ※ 구체적인 조사계획은 PT 설명 참조

라. 사업시행자 의견(경주시)

- 당초계획을 수정하여 전면 정밀발굴 및 조사기간의 최대한 확보
 - 발굴과정에서 중요 유구나 복잡한 층위가 확인될 경우 추가적인 조사기간 확보 가능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가” 구역에 대해서만 발굴허가(발굴 결과 등은 전문가 검토회의의 검토를 받을 것)
- 조건부가결 8명 / 출석 8명

8. 고창 분청사기요지(사적 제250호) 발굴(시굴)

가. 제안사항

고창군에서 추진하는 전라북도 고창군 소재 「고창 분청사기요지(사적 제250호)」 발굴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고창 분청사기요지(사적 제250호)에 대한 발굴(시굴)조사를 통해 요지의 현황과 보존상태를 파악하여 추후 체계적인 조사의 기초자료와 유적의 보존·정비 방안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고창군수
- (2) 발굴 대상지역 : 전북 고창군 부안면 수동리 산11-16번지 일원
- (3) 발굴 대상면적 : 10,210m²
-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12일
- (5) 발굴기관 :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 조사단장 : ○○○(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원 책임연구원)

라. 의결사항

- 부결
 - 사적지 성격에 맞는 체계적이고 세밀한 조사계획을 다시 제출받아 심의
- 부결 8명 / 출석 8명

9. 강진 월남사지 정비사업부지 내 발굴

가. 제안사항

강진군에서 추진하는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강진 월남사지(전남도 기념물 제125호) 정비사업부지 내」 발굴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시굴조사 시 확인된 추정 탐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 정비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강진군수
- (2) 발굴 대상지역 :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832번지 일원
- (3) 발굴 대상면적 : 3,615㎡
-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17일
- (5) 발굴기관 : (재) 민족문화유산연구원
 - 조사 단 장 : ○○○(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원장)

라. 참고사항

- 동 건은 전남도 기념물 정비사업(발굴조사)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를 득한 사항임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발굴조사 허가
- 원안가결 8명 / 출석 8명

10. 강진 전라병영성 정비사업부지 내 발굴

가. 제안사항

강진군에서 추진하는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강진 전라병영성(사적 제397호) 정비사업에 따른」 발굴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5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전라병영성 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남측지역 건물지에 대한 발굴조사 및 외부 해자 지역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정비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강진군수
- (2) 발굴 대상지역 : 전남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137번지 일원
- (3) 발굴 대상면적 : 53,837m²(발굴 32,400m², 시굴 21,437m²)
-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250일
- (5) 발굴기관 : (재) 한울문화재연구원
 - 조사단장 : ○○○(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원 실장)

라. 의결사항

- 부결
 - 발굴조사 계획 재 제출 후 심의
- 부결 8명 / 출석 8명

11. 김해 유하 패총 발굴

가. 제안사항

국립김해박물관에서 추진하는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김해 유하 패총(경남도 기념물 제 45호)」 발굴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유적 인근의 분묘유적인 양동리 고분과의 성격규명을 위한 학술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국립김해박물관장
- (2) 발굴 대상지역 : 경남 김해시 유하동 180-3번지 일원
- (3) 발굴 대상면적 : 3,668㎡
-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 (5) 발굴기관 : 국립김해박물관
 - 조사 단 장 : ○○○(동 박물관장)
 - 책임조사원 : ○○○(동 박물관 실장)

라. 참고사항

- 동 건은 경남도로부터 학술조사(발굴조사)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를 득한 사항임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발굴조사 허가
- 원안가결 8명 / 출석 8명

12. 서울 종로 경희궁길 ○○ 일원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가. 제안사항

서울 종로구 경희궁길 ○○ 일원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에 대한 매장문화재 평가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종로구 경희궁길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2015. 6. 23.)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정)에 따라 평가회의를 실시(2014. 6. 23.)하고, 당해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여부 및 향후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조사 개요

- (1) 신청인 : ○○○
- (2) 발굴장소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 / 발굴 2,340㎡
- (3) 발굴기관 : (재)한울문화재연구원
 - 조사 단 장 : ○○○(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원 조사연구실장)
- (4) 발굴기간 : 2015. 4. 27.~6. 15.(실조사일수 24일)
- (5) 조사결과
 - 조선시대 선회궁터와 인접한 곳에서 담장과 암거가 확인됨
 - 출토유물은 조선시대 백자편과 기와편 등이 확인됨

라. 전문가 검토회의(2015. 6. 23. / ○○○, ○○○, ○○○)

- 경희궁 권역 내에 위치하는 유적으로, 경희궁 조성 이전시기부터 조선후기에 이르는 건물지 관련 유구가 확인됨
- 유구가 확인된 지역은 복토하여 보존하되, 보존에 따른 지하층 건축은 유구 외곽 경계로부터 1m 이상 이격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마 등 우기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노출된 유구에 대한 복토 등 발굴현장 안전조치를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임

마.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2015. 6. 23. / ○○○, ○○○, ○○○)

- 평가 평점 : 86.2점 (원형보존 기준평점이상)
 - 유적의 활용성이 취약하므로, 사업지 내에 유적의 현황과 가치 등을 알리는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바. 사업시행자 의견

- 발굴된 유적 상부에 1m이상 충분한 복토·성토 한 후, 온통기초를 하고 철근콘크리트조의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짓고자 함
- 유적이 확인되지 않은 지역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창고 등의 지하층을 두고자 함
- 신축되는 건축물 외부 벽면에 발굴유적 안내판을 설치할 것임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사업시행자 의견대로 조치
- 원안가결 8명 / 출석 8명

13. 국립서울농학교 수련관 증축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가. 제안사항

서울 국립서울농학교 수련관 증축부지 내 유적에 대한 매장문화재 평가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종로구 국립서울농학교 수련관 증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2015. 5. 29.)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정)에 따라 평가회의를 실시(2014. 5. 29.)하고, 당해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여부 및 향후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조사 개요

- (1) 신청인 : 국립서울농학교
- (2) 발굴장소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03 / 발굴 2,340㎡
- (3) 발굴기관 : (재)한울문화재연구원
 - 조사단장 : ○○○(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원 조사연구실장)
- (4) 발굴기간 : 2015. 5. 14.~6. 30.(실조사일수 9일)
- (5) 조사결과
 - 조선시대 선희궁터와 인접한 곳에서 담장과 암거가 확인됨
 - 출토유물은 조선시대 백자편과 기와편 등이 확인됨

라. 전문가 검토회의(2015. 5. 29. / ○○○, ○○○, ○○○)

- 조선 영조때의 선희궁과 관련된 담장석렬과 배수로가 확인됨
- 발굴 전 원래 상태로의 복토와 유구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성토 등 보존방안을 강구할 것

마.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2015. 5. 29. / ○○○, ○○○, ○○○)

- 평가 평점 : 79.86점 (원형보존 기준평점이상)
 - 조선 영조때 조성된 선희궁과 관련된 유구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음
 - 유구 복토를 위해 복토와 충분한 성토가 필요함

바. 사업시행자 의견

- 발굴된 유적 상부에 충분한 복토·성토 한 후, 온통기초를 하고 철근콘크리트조의 수련관을 짓고자 함
- 신축되는 수련관 출입구와 벽면에 발굴유적 안내판을 설치할 것임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사업시행자 의견대로 조치
- 원안가결 8명 / 출석 8명

14. 양평 양수리 ○○○번지 일원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가. 제안사항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번지 일원 내 유적에 대한 매장문화재 평가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양평 양수리 ○○○번지 일원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2015. 6. 23.)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정)에 따라 평가회의를 실시(2015. 6. 23.)하고, 해당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여부 및 향후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조사 개요

- (1) 신 청 인 : ○○○
- (2) 발굴장소 및 면적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번지 일원 / 발굴 2,922㎡
- (3) 발굴기관 : (재)서해문화재연구원
 - 조 사 단 장 : ○○○(동 원장)
 - 책임조사원 : ○○○(동 조사부장)
- (4) 발굴기간 : 2015. 4. 15.~2015. 5. 29.(실조사일수 30일)
- (5) 조사결과
 - 청동기 주거지 3기, 원삼국~백제초기 단계의凸자형 주거지 16기, 원형수혈 1기, 고려시대 석렬유구 2기, 고려시대 소성유구 등 확인
 - 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 무문토기편, 백제초기 수혈주거지에서 경질무문토기, 타날 문토기 등 출토

라. 추진경과

- (1) 전문가 검토회의(2015. 6. 23. / ○○○, ○○○, ○○○)
 - 청동기시대부터 백제초기에 이르는 집단 취락유적으로 철자형 주거지의 화덕시설 등이 잘남아 있음
 - 발굴조사 결과 양수리 일대를 포함한 한강유역에서 집중적으로 발굴되는 철자형 주거지가 확인되는데 유구의 성격이나 보존상태로 볼 때 복토보존 후 사업을 시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2)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2015. 6. 23. / ○○○, ○○○, ○○○)

- 평가 평점 : 62.85점(복토보존 및 기록관리 철저)

마. 사업시행자 의견(○○○)

- 복토 후 성토하여 최대한 유적을 보존할 수 있는 매트공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빠른 처리 바람

바. 지자체 의견(양평군)

- 양수리 ○○○번지 유적 발굴조사관련 복토보존 후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전제 하에 사업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유구는 복토하여 보존하고 사업시행
- 원안가결 8명 / 출석 8명

15. 파주 조리-법원 간 도로확포장공사구간 내 유적 보존방안 재심의

가. 제안사항

파주 조리-법원 간 도로확포장공사구간 내 유적에 대한 매장문화재 평가결과를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파주 조리-법원 간 도로확포장공사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2014. 9. 23.)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정)에 따라 평가회의를 실시(2014. 9. 23.)하고,
- 유적의 보존방안에 대하여 2015년 제2차 매장문화재분과 회의(2015. 2. 27.)에서 심의한 결과 “사업시행자 의견 3안으로 하되 설계계획 제출받아 재검토”로 보류된 사항으로 동 유적에 대한 보존방안(사업시행방안)을 재심의 하고자 하는 것임

다. 발굴조사 개요

- (1) 신청인 : 경기도건설본부장
- (2) 발굴장소 :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법원읍 대능리 일원
- (3) 발굴면적 : 시굴 5,934㎡ / 발굴 4,700㎡
- (4) 발굴기관 : 경기도자박물관
 - 조사단장 : ○○○(동 박물관장 직무대행)
 - 책임조사원 : ○○○(동 박물관 학예연구사)
- (5) 발굴기간 : 2014. 4. 10.~9. 25.
- (6) 조사결과
 - 신석기시대 주거지 39기 및 수혈 1기, 조선시대 토광묘 24기, 조선 후기~근대 건물지 1기, 미상수혈 4기와 (추정)숫가마 1기를 포함하여 모두 70기의 유구가 확인됨

라. 추진경과

- (1) 전문가 검토회의
 - 1차(2014. 9. 2. / ○○○, ○○○)
 - 구릉 정상부와 경계면에 신석기시대 주거지 39기가 확인되었으며, 조사지역 외 동서면에 주거지가 계속 분포하고 있어, 신석기시대 마을유적으로 최대로 판단됨

- 조사 미완료 유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망됨
- 역사성, 희귀성, 집단성, 접근성 등으로 미루어 중요 거점 마을로 추정되며 유적의 성격이 매우 중요하므로, 관련 위원회에서 검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함

○ 2차(2014. 9. 23. / ○○○, ○○○, ○○○)

- 신석기시대 집터 39기를 비롯하여 조선시기 토광묘, 건물지 등이 확인됨
- 신석기 집터의 노지, 단, 유물 등을 중부내륙지역 기조사내용과 비교하면 특이함이 있음
- 중부내륙지역의 신석기 문화성격 파악에 도움이 되고 마을 형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 내부시설(노지, 단시설, 출입부)이 특이함
- 유적에 대한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그 중요성이 있으므로 조사 후 복토 등 여러 방법을 검토하여 유적이 보존되도록 조치할 것

(2)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2014. 9. 23. / ○○○, ○○○, ○○○)

○ 평가 평점 : 88.89점 (원형보존 기준평점이상)

- 신석기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마을유적이 확인됨, 신석기시대 수혈주거지의 내부 구조 및 성격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보존조치를 강구하여 현지 보존하는 것이 좋겠음
- 중서부지역 전기 신석기시대의 대형취락지로 역사문화교육장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므로 복토한 뒤 고가구간으로 유적지를 통과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함

(3) 2014년 제12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심의(2014. 11. 21.)

○ 심의결과 : “현지조사 후 재검토”로 보류됨

(4) 현지조사(2014. 12. 11. / ○○○, ○○○, ○○○)

- 중부 내륙지역의 신석기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다수의 주거지와 유물이 확인되었음
- 이 유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복토보존 등 여러 방법을 검토하여 보존토록 조치하여야 하고, 더불어 주변지역도 함께 보존되어야 함

(5) 2014년 제13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심의(2014. 12. 19.)

○ 심의결과 : “현지조사 후 재검토”로 보류됨

(6) 현지조사(2015. 1. 21. / ○○○, ○○○)

- 신석기시대 중기에 속하는 발굴사례가 드문 구릉성 취락의 일부가 확인되었으며 그 학술적·문화사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됨
- 이러한 유적의 가치를 고려하여 유적이 입지하는 구릉 능선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당유적이 보호되도록 도로를 건설하는 방안 모색 요망, 즉 현재 발굴되어 노출된 능선의 양단의 유구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 후 도로노선 수정안 검토 요망

- 현재의 발굴구역 밖 북쪽에 입지하는 완만한 능선의 사업부지에 대한 추가 표본조사 요망
- 현재 조사된 유구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일단 주거지 내부에 모래를 채우고 강우 등에 의해 추가적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조치를 긴급히 취할 것

(7) 2015년 제2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심의(2015. 2. 27.)

- 심의결과 : “사업시행자 의견 3안으로 하되 설계계획 제출받아 재검토”로 보류됨

(8) 2015년 제5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심의(2015. 5. 22.)

- 심의결과 : “새로운 유적보존방안을 제출받아 검토”

(9) 파주 신석기 마을유적 학술·기술 검토회의 개최

가. 1차 (2015.6.5. / ○○○, ○○○, ○○○, ○○○, ○○○, ○○○)

- 내륙지역 구릉상에 형성된 전기 취락유적 발견의 최초 사례로, 현지 원형보존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다른 유사사례에 비추어 유적의 위치와 입지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본선 및 Ramp구간을 지하 차도화(개착식 터널 구조) 하여 성토한 후 주변 산능선 지형과 조화되는 신석기 유적 공원 조성

나. 2차 (2015.6.26. / ○○○, ○○○, ○○○, ○○○, ○○○, ○○○)

- 본선 및 Ramp구간을 지하차도화(개착식구조)하여 성토 후 주변 산능선 지형과 조화되는 신석기 유적 공원 조성(경기도)
- 보존유적 관리·활용계획 및 주변유적 보존대책 수립(파주시)

마. 사업시행자 의견(경기도건설본부)

- 본선 및 Ramp구간을 지하차도화(개착식구조)하여 성토 후 주변 산능선 지형과 조화되는 복원계획을 수립 시공하겠음

바. 지자체 의견(파주시)

- 신석기마을 유적 이전복원 및 유적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적극 검토
- 향후 이전 복원 유적은 파주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사업시행자 의견대로 조치
- 원안가결 8명 / 출석 8명

16. 용인 신갈동 ○○○번지 주유소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가. 제안사항

용인 신갈동 ○○○번지 주유소부지 내 유적에 대한 매장문화재 평가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용인 신갈동 ○○○번지 주유소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2015. 6. 1.)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정)에 따라 평가회의를 실시(2015. 6. 1.)하고, 해당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여부 및 향후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조사 개요

- (1) 신청인 : 세진에너지(주)
- (2) 발굴장소 및 면적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번지 / 발굴 1,000㎡
- (3) 발굴기관 : (재)서경문화재연구원
 - 조사단장 : ○○○(동 원장)
 - 책임조사원 : ○○○(동 학예연구실장)
- (4) 발굴기간 : 2015. 4. 13.~2015. 5. 7.(실조사일수 15일)
- (5) 조사결과
 - 삼국시대 주거지 2기, 석실묘 1기, 수혈유구 3기·소성유구 1기 등 총 9기 유구 확인
 - 횡혈식 석실묘 1기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정확한 시기는 알수 없으나, 축조양식이나 주변 유적현황을 고려할 때 비교적 이른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
 - 추후 용인 서북부지역의 삼국~통일신라시대 문화상을 연구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라. 추진경과

- (1) 전문가 검토회의(2015. 6. 1. / ○○○, ○○○, ○○○)
 - 백제 주거지 2동과 고구려 석실분 1기외 소성 유구와 토광묘 확인, 백제 주거지 1호 내부에서 한성기 와당과 기와 및 토기 출토
 - 고구려 석실은 규모는 작지만, 축조 방법을 잘 보여주는 구조와 잔존상태가 우수하므로 보존활용 할 가치가 있음(고구려 석실의 경우 분구 범위와 묘관의 범위를 확인 조사 필요)

- 현장의 주변 경관과 여건상 현지보존이 어려우므로 이전복원하여 보존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와 조사단의 협의·협력하에 신속히 이전하고, 복원·전시는 용인시와 협의하여 잘 활용 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2)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2015. 6. 1. / ○○○, ○○○, ○○○)

- 평가 평점 : 86.59점 (원형보존 기준평점이상)
 - 고구려 석실분은 구조 및 특징으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원형 및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인근 박물관 등으로 이전 복원하여 전시 및 교육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음

마. 사업시행자 의견

-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석실분이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서 보존의 가치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음
- 본사업의 지연으로 사업진행과 자금확보 등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전 및 복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고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정상 참작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 지자체 의견(용인시, 2015. 6. 11.)

- 비용부담
 - 전액 사업자부담으로 처리
 - 종전의 보존유적 처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자부담하여 이전복원 지시를 받아 조치해 왔으므로 형평성 유지를 위해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사업자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이전복원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지자체에서 비용 일부를 부담할 경우 예산 편성 기간동안 고액의 유구 보관비용 발생하여 비효율적임
- 이전장소 : 용인문화유적전시관 부지 주변 검토 결과 3개소 이전 가능
- 이전복원방법 : 노출전시가 아닌 지하 매장 후 복토하고 안내판 설치하여 비용 절감

사.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 대로 조치
- 조건부가결 8명 / 출석 8명

17. 영주 다목적댐 건설사업 구역(금광Ⅱ)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가. 제안사항

영주 다목적댐 건설사업 구역(금광Ⅱ) 내 유적에 대한 매장문화재 보존평가 결과를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영주 다목적댐 건설사업 구역(금광Ⅱ)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 및 평가회의를 실시(2015. 5. 6.)하였는 바, 해당유적에 대한 보존평가 결과를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조사 개요

- (1) 신 청 인 :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건설단
- (2) 발굴장소 : 경북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930번지 일원
- (3) 발굴면적 : 전체면적 74,198㎡(정밀발굴) * 총 7개 구간(A~G)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
- (4) 발굴기관 : (재)한국문화연구원(책임조사원 : ○○○)
- (5) 발굴기간 : 2013. 12. 3.~현재 조사진행 중 * A2(Ⅱ)구간은 완료
- (6) 조사결과 : 발굴과정에서 A2(2)구간 주요 유적 발굴(금강사지터)에 대한 보존대책 대두
 - 출토유구 : 금강사지(통일신라~고려) 유구 등 확인
 - 출토유물 : 광명대(금강사 명문 有), 향완, 불상대좌 등

라. 전문가 검토회의 및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2015. 5. 6./ ○○○, ○○○, ○○○)

- 평가 평점 : 84.51점 (원형보존 기준평점 74.31이상)
 - A2(Ⅱ)구간은 통일신라~고려시대 사지, 가마터 등의 유구와 관련 유물이 다량 출토됨(금강사지터)
 - A2(Ⅱ)구간은 유구의 성격, 잔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지 성토 보존토록 하고 추가적 유구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토하되, 구체적 성토계획은 사전에 전문가 자문필요
 - A2(Ⅱ)구간의 발굴이 완료된 구역은 부분완료 무방

마. 사업시행자 의견(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건설단)

- 전문가검토회의 결과대로 조치 이행 수용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유구는 전문가 검토회의 및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대로 조치하되, 확인된 유구에 대해서는 3D스캔 실시하여 기록자료 확보
- 조건부가결 8명 / 출석 8명

18. 경주 말방리 ○○○번지 외 1필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가. 제안사항

경주 말방리 ○○○번지 외 1필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지원 발굴)에 대한 매장문화재 보존평가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말방리 ○○○번지 외 1필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 및 평가회의를 실시(2015. 6. 18.)하였는 바, 해당유적에 대한 보존평가 결과를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조사 개요

- (1) 신청인 : ○○○
- (2) 발굴장소 : 경북 경주시 외동읍 말방리 ○○○번지, ○○○번지
- (3) 발굴면적 : 787㎡(시굴)
- (4) 발굴기관 : (재)한국문화재단(책임조사원 : ○○○)
- (5) 발굴기간 : 2015. 5. 20.~2015. 5. 22.
- (6) 조사결과 : 송복사지 관련 유적에 대한 보존대책 대두
 - 조사대상지의 진입로부지(277㎡)를 제외한 부지(510㎡)에서 통일신라시대 추정 건물지 1동, 적심 2개, 수혈유구 4기, 집석유구 1기, 주혈 1개 등이 확인됨

라. 전문가 검토회의 및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2015. 6. 18. / ○○○, ○○○, ○○○)

- 평가 평점 : 74.61점 (원형보존 기준평점 74.31이상)
 - 조사구역 내에서 통일신라시대의 건물지로 적심다수 그리고 다량의 기와편이 노출되었음.
 - 송복사지 부속건물로 추정되고 아울러 석탑의 면석이 동편 독에 두 개가 박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문화재위원회에서 보존 필요성과 보존 범위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

마. 사업시행자 의견(○○○)

- 사정을 모르고 올해 2월에 토지매입, 건물 신축하는데 애로가 많음

바. 의결사항

- 부결
 - 건축 시행 불가, 유적 보존(원형보존)
 - 경주시에 송복사지 보존관리 방안 제출 토록 조치
- 부결 8명 / 출석 8명

19. 울산미술관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가. 제안사항

울산미술관부지 내 유적에 대한 매장문화재 평가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산미술관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2015. 5. 11.)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정)에 따라 평가회의를 실시(2015. 5. 11.)하고, 해당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여부 및 향후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조사 개요

- (1) 신청인 : 울산광역시
- (2) 발굴장소 : 울산광역시 중구 장춘로 115(구 울산초등학교) 일원
- (3) 발굴면적 : 15,914m²
- (4) 발굴기관 : (재)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 조사단장 : ○○○(동 연구원 센터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원 문화재센터 팀장)
- (5) 발굴기간 : 2014. 5. 20.~2015. 6월 현재 조사 진행 중
- (6) 조사결과
 - 객사의 주 건물인 학생관은 초축 이후 몇차례 중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청 및 동청, 서청, 석축시설, 우물 등이 조사됨
 - 부속건물인 익랑건물지로 추정되는 초석건물지와 중문인 제승문의 석축시설과 건물지, 계단이 확인됨
 - 남문루의 경우 훼손이 되었으나 적심 일부와 배수로가 확인되었고 담장열, 수혈, 폐와무지 등이 확인됨
 - 전문가 검토회의 이후 추가조사 결과
 - 객사부지의 중층유구 확인조사는 후대 객사 건물과 선대 석축렬이 중복되어 확인되고, 후대 객사건물지의 적심시설이 추가로 확인됨
 - 우물유구는 현재 벽석에서 270cm 아래까지 조사가 진행중이며 아직 우물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음. 내부에서 조선시대 자기편과 기와편이 확인됨

라. 전문가 검토회의(2015. 5. 11. / ○○○, ○○○, ○○○)

- 울산읍성의 객사터 관련유구와 유물이 조사되었음. 학술적·문화사적 가치가 있는 유구이므로 현지보존토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객사터의 중층유구 확인을 위하여 토층조사 요망. 우물유구는 최대한 조사 요망
- 객사터의 경관과 조화되도록 울산미술관부지 배치 요망

마.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2015. 5. 11. / ○○○, ○○○, ○○○)

- 평가 평점 : 90.88점 (원형보존 기준평점이상)
 - 울산읍성의 성벽은 대부분 멸실된 상태로 읍성 내 주요 건물인 객사터가 양호하게 확인된 점에 있어서 중요한 발굴성으로 평가됨
 - 울산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가치가 큰 유구이므로 현지보존조치 요망

바. 사업시행자 의견(울산광역시)

- 부지의 역사성을 살리고 객사와 어울리는 건축디자인 및 배치계획 수립
- 울산객사의 주요 건물인 학성관, 제승문, 남문루 유구는 원형보존하고, 세 유구의 기본축을 살릴 수 있도록 미술관 건물 배치
- 학성관과 제승문 사이의 운동장 부분은 지하층 활용하여 주차장 등으로 이용

사.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유구는 전문가 검토회의 및 울산시안대로 보존함
 - 미술관 현상공모시 매장문화재분과위원 포함
- 조건부가결 8명 / 출석 8명

20. 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울산 건설공사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가. 제안사항

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울산 건설공사 내 유적에 대한 매장문화재 평가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울산 건설공사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2015. 3. 30. / 6. 29.)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정)에 따라 평가회의를 실시(2015. 6. 29.)하고, 해당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여부 및 향후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조사 개요

- (1) 신청인 : 한국도로공사
- (2) 발굴장소 :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 (3) 발굴면적 : 2공구(시굴 32,047㎡), 6공구(발굴 13,187㎡)
- (4) 발굴기관 : (재)울산문화재연구원
 - 조사단장 : ○○○(동 연구원실장)
 - 책임조사원 : ○○○, ○○○(동 연구원 조사연구부장)
- (5) 발굴기간 : 2014. 5. 20.~현재 조사 진행 중
- (6) 조사결과
 - 2공구
 - 밀양 금곡리 유물산포지1에서는 봉성사지와 관련된 건물지와 “奉聖寺”가 새겨진 명문와가 출토되었고, 출토유물과 토층에서 통일신라~조선시대까지 중북양상이 확인됨. 창건연대는 통일신라시대(9세기)로 추정되지만, 조선시대(15세기)까지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주변지역을 답사한 결과 추정 연못 북서쪽 일부 구역은 금회 시굴조사 범위에서 제외됨. 그러나 밀양-울산 고속도로 사업구간에 포함되는 지역 일부까지 봉성사지의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밀양 금곡리 지석묘군에서는 지석묘 상석 주변으로 부석 일부가 확인되므로 지석묘 상석 조사 후 하부구조 유·무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6공구

- 통일신라 폐사지로 추정되며, 석탑의 부재, 금동불상 등이 출토됨
- 유적의 중심연대는 통일신라시대(7~8세기)로 추정되지만, 중복양상이 관찰되는 점과 일부 고려시대의 유물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고려시대까지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금당지가 사역의 중심부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 석탑지가 주 사역과 떨어져서 위치하는 점에서 볼 때 통일신라의 전형적인 평지가람 형식을 따르지 않음

라. 전문가 검토회의

(1) 1차(2015. 3. 30. / ○○○, ○○○, ○○○)

○ 2공구

- 통일신라시대로 추정되는 사지(건물지, 석렬 등), 분청사기가마터, 지석묘 추정유구 등이 확인됨
- 확인된 유구를 중심으로 해당유구를 발굴로 전환하기 바람

○ 6공구

- 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로 편년되는 사지(건물지, 추정탑지, 우물터, 정원유구 등과 와당, 벽돌, 불상(금동불) 등 다수의 유구·유물이 출토되었음
- 건물지가 북편으로 확장되는 점을 고려하여 확장 발굴 요망
- 지표조사 결과 와당 등 유물이 수습된 A지점과 B지점 중 사업구간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발굴조사로 전환 요망(인근 발굴지역에서 출토된 유물과 동일함)
- 유적의 처리방안은 발굴이 종료된 후 조사된 유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함

(2) 2차(2015. 6. 29. / ○○○, ○○○, ○○○)

○ 2공구

- 삼국유사에 나오는 “奉聖寺”의 위치가 확인된 중요 유적임
- 도로공사의 보존방법인 폭약을 사용하지 않는 가칭 ‘무진동터널공법’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 요망
- 봉성사지 사역이 지표조사 결과와 실제 양상이 거의 중복되지 않고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검토 요망. 필요시 조사기관에 대한 조치 요망
- 보존가치가 큰 유구임

○ 6공구

-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를 중심으로 하여 그 전·후에까지 걸치는 매우 양호한 상태를 보이는 사찰 유적임

- 석탑재 등 각종 석조 유물과 함께 경사지를 이용한 석축 기단 위에 조성된 건물지, 각종 공방유구, 추정 목욕유구 등이 확인되며, 각종 암·수막새 및 치미 등 특수 기와를 비롯하여 다량의 와편, 토기 및 자기편 등이 출토됨
- 경주-언양간의 직통로인 구조곡에 연접해 있으며, 기와, 토기 및 자기 등의 다양함과 함께 석축 유구의 양호한 유존 상태로 볼 때 통일신라시대 주요 교통로 상에서 그 기능이 주목되는 사지로서 보존할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됨
- 유적의 입지, 확인된 유구의 상태, 출토유물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철저한 발굴조사와 함께 유적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최초조사(지표조사)의 부실이 의심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조치 요망됨

마.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2015. 6. 29. / ○○○, ○○○, ○○○)

- 2공구 평가점수 : 88.84점 (원형보존 기준평점이상)
 - 시굴단계이지만 삼국유사에 기록된 봉성사의 위치를 출토된 기와명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에서 역사성·지역성에서 우수하여 현 단계에서 보존시키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향후 寺地전문 학술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 6공구 평가점수 : 94.00점 (원형보존 기준평점이상)
 - 출토유구, 유구상태, 학술적 가치 등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판단됨
 - 신라와 고려시대로 이어지는 사찰 유적의 특징을 매우 잘 보여주는 유적으로서 보존할 필요가 크며 정밀발굴조사를 통한 성격파악이 요구됨

바. 사업시행자 의견(한국도로공사)

- 문화재 보존방안
 - 봉성사지 : 2공구 단장3터널 종점부
 - 종단선형 하향조정 및 터널 설치로 유적 원형보존
 - 가천사지 : 6공구 상북터널 종점부
 - 현재 선형으로 모래 및 양질토사로 보존조치 후 토공으로 유적 원형보존
- 설계시 봉성사지 구간은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노선을 이격하였고 가천리 사지는 조사된 바가 없었음. 하지만, 시굴조사결과 고속도로 구간에서 유적이 발견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봉성사지 구간은 당초 절토로 인해 훼손이 불가피하였으나 유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종단선형 하향조정 및 터널화를 추진하여 문화재의 원형보존이 가능하도록 보존 방안을 시행할 계획임

- 가천리 사지 구간은 인근 사찰, 주민, 업체의 극심한 민원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평면 선형 변경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임. 또한, 계곡부에 갭문이 위치하고 장대터널 종단경사 기준 초과 등으로 중단선형 조정도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현실계 선형으로 모래 및 양질토사로 보존조치후 토공사를 시행하여 문화재의 원형보존이 가능하도록 보존방안을 시행할 계획임
- 사업시행자는 문화재 보존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문화재 보존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보류 8명 / 출석 8명

21. 국립경주박물관 종합수장고 남측부지 건립관련 심의

가. 제안사항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추진하는 종합수장고 조성사업 남측부지의 건립계획에 대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일원에서의 지속적인 발굴에 따른 국립경주박물관의 수장공간 부족 해소를 위한 종합수장고 신규 확장
- 동 건물은 2011. 5. 3.~2012. 9. 28. 발굴조사가 완료되어 2014년 5월 매장문화재분과 심의를 거쳐 “유구 위 성토작업(평균 두께 1.5m 복토) 후 복토층 위에 매트공법으로 시공하라”는 완료조치가 통보된 건인데, 실시설계 전 건물부지의 변경 및 이에 따른 조성방안에 구릉사면부의 각기 공정이 포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심의를 받고자 함

다. 사업내용

- (1) 사업기간: 2013년~2017년
- (2) 장소: 국립경주박물관 일원
- (3) 부지 총면적: 147,256㎡(신규확장 남측부지 73,133㎡ 포함)
- (4) 사업규모: 대지면적 61,896㎡, 연면적 9,183㎡
- (5) 총사업비: 30,496백만원
- (6) 추진일정
 - 종합수장고 신축 실시설계(안) 완료: 2014. 3.~2015. 9.
* 문화재현상변경 등 심의 포함
 - 종합수장고 신축공사: 2015. 11.~2017. 12.
 - 격납대 설치 등 운영준비 및 시범운영: 2018. 1.~9.
 - 개관식 및 운영개시: 2018. 10. 7.

라. 사업시행자 의견(국립경주박물관)

- ※ 원안: 부지 동편(보존구역 내)을 활용하여 1.5m 복토 후 매트 공법 시공
- 유구 보존구역 밖 서쪽 사면부 활용 종합수장고 건립
 - 보존구역 전체 유지, 구릉 사면부 활용에 따른 남산 조망권 확보
- 지층 1층 건물 건립을 위한 구릉 경사면 부분 깎기
 - 구릉 경사면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층 1층 +지상 2층 건물 건립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국립경주박물관 제출안대로 조치
- 원안가결 8명 / 출석 8명

22. 경주 교동 158-2번지 일원 월정교 주변 유적 발굴조사 관련 업무정지 처분 심의

가. 부의사항

경주 교동 158-2번지 일원 월정교 주변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와 관련하여, (재)계림문화재연구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사항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의사유

- 발굴허가 관련 지시사항 위반 등
 - 3차 전문가검토회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주 내용이었던 층위조사에 대한 지시위반

다. 발굴개요

- (1) 허가번호: 제2014-0165호(2014. 2. 25.)
- (2) 사업시행자: 경주시 신라문화융성과
- (3) 발굴사유: 경주 월정교 주변 정비사업 부지 내 유적확인
- (4) 조사기관: (재)계림문화재연구원
- (5) 조사면적: 당초 시굴허가 16,647m²/ 정밀발굴 전환 4,208m²

라. 그간의 경과

- (1) 발굴허가 : 2014. 2. 25.(당초 시굴허가 16,647m²)
- (2) 시굴조사 : 2014. 4. 7.~2014. 4. 25.(실 조사일 수 13일)
- (3) 1차 전문가검토회의(○○○, ○○○) : 2014. 5. 22.(시굴조사 후 정밀발굴 전환 여부 검토)
 - 조사구역 내 유구가 확인된 곳과 금회 시굴조사 대상에서 제외는 되었지만 유구의 존재 가능성이 높은 월정교 남측부지를 포함하여 정밀발굴조사를 실시
- (4) 변경허가 : 2014. 8. 21.(정밀발굴 전환/ 1차 4,208m²)

* 1차 전문가검토회의 결과에 따라 산정한 총 정밀발굴 필요 구간면적은 13,400m²이며, 2차구간 2,930m² / 3차구간 6,262m²은 아직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

- (5) 정밀발굴조사 : 2014. 10. 14.~2015. 4. 15.(실 조사일수 60일)
- (6) 2차 전문가검토회의(○○○, ○○○) : 2014.12.4.(정밀발굴에 대한 검토)
 - 노출된 건물지의 경우 현 지표에서 3.8~4.0m 정도인 점을 고려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월정교와의 관계(높이 차이가 큼)에 대한 검토 조치

- 노출된 유구는 조사완료 후 유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한 후 성토, 현지보존

(7) 3차 전문가검토회의(○○○, ○○○) : 2015. 3. 19.(정밀발굴에 대한 검토)

- 선사시대로부터 누시대적 유구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 세밀한 층위구분을 통한 층서적인 정밀발굴을 실시할 것

- 정밀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보존여부 검토

(8) 4차 전문가검토회의(○○○, ○○○, ○○○) : 2015. 5. 11.(정밀발굴에 대한 검토)

- 현장 확인결과 충분한 층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
- 정밀한 층위학적 조사를 위해 충분한 조사기간 확보, 조사인력 보충 등 필요

(9) 발굴조사자료를 제출토록 우리청에서 공문통보 : 2015. 5. 13.

- 층위조사를 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토록 공문으로 조사기관에 통보

<제출대상 자료>

: 조사구역 내 표토 아래층과 현재 노출된 유구 상층 구간에 대한 조사내용

- 현재 남겨진 발굴조사 독과 조사구역 외곽 벽면을 제외한 조사구역 내 토층조사, 포함유구·유물조사, 문화층조사 관련 사진 및 도면(토층사진, 토층실측도면 포함) 등 조사 자료
- 제출사진과 실측도면의 유적 내 위치 파악이 가능한 현황도

(10) 조사기관의 회신공문 수령 및 자료확인 : 2015. 5. 15.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제출한 자료를 수령한 결과, 현 노출 층위의 상층에 대한 조사증거가 없는 것을 확인

(11) 이와 별도로 조사기관의 전문가검토회의 이행조치 회신공문을 수령 : 2015. 5. 18.

- 회신공문에는 층위조사에 대한 증거자료는 역시 없었으며, 조사기관에서는 조사인력 보강 및 조사기간 연장 등에 대한 계획없이 단순히 관련 전문가(1인)의 자문을 받아 발굴하겠다는 내용만을 회신

(12) 4차 전문가검토회의 결과에 대한 이행촉구(발굴중지 포함) : 2015. 5. 26.(공문통보)

- 현재 조사여건(전문 조사인력 부족 등)으로는 발굴조사의 부실이 우려되므로, 당해 유적에 적합한 전문 조사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발굴조사를 중지할 것
- 당해 유적의 층위조사 등이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조사(조사기간 연장)를 할 것
- 관계 전문가 1인이 아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받아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제시되었던 이하 내용을 이행하도록 할 것

(13) 5차 전문가검토회의(○○○, ○○○, ○○○) : 2015. 6. 25.(이행사항에 대한 종합검토)

검토(평가) 항목	결 과
세밀한 층위조사에 대한 이행여부 (현장 최종 확인)	층위적 이해도가 부족하며, 토층구분 능력이 미흡 (현 노출 유구위의 층위에 대한 층위조사를 했다는 증거가 없음)
향후 보완조사 계획에 대한 검토	구체적 (층위) 보완조사 계획 미 수립
조사인력	토층의 명확한 구분과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을 갖춘 조사인력 미흡
조사기간	현장조사 30일 추가계획 또한 조사기간이 부족
전문가집단 구성	현재 시대별로 위촉된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수 시로 받아 조사를 수행할 필요 있음
종합의견	전반적으로 다양한 시대의 유적이 중층적으로 존재하는 층위학적 특징을 파악하지 못하고 조사가 진행되어 왔으므로, 향후 정밀발굴을 허가받은 현재 조사 지역외 2차, 3차 구간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는 조사기관의 교체를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음 지금까지 이루어진 부실조사에 대한 징계조치 요망

마. 조사기관 의견(계림문화재연구원)

- 조사단 인원변동이 있는 이후로 이제 체계가 잡혀가고 있으며, 보완조사는 앞으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성실히 수행하겠음(구체적 보완조사는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받아 수립 예정)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제2항
 “ 문화재청장은 ~ 발굴허가를 하는 경우 그 허가의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1항 제5호
 “ 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5. 제11조 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 동 시행령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제1항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II.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 처분기준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 제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1년 ○ 3차 이상 위반: 2년

바. 의결사항

- 보류
 -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방안 마련 후 심의
- 보류 8명 / 출석 8명

II. 검토사항

1. 발굴허가 관련 「상피제도」 운영 개선계획

가. 제안사항

발굴허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피제도 운영과 관련, 다음과 같이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4년도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 제7차('14. 7. 18.), 제8차('14. 8. 22.) 및 2015년도 제2차('15. 2. 27.) 회의에서 '상피제도의 적용기준과 범위'에 대한 검토가 있었음
- 금번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동 상피제도가 법령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과 판단기준 세분화' 등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 결과('15. 5. 15.)

-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문화재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관련 규정상 문화재 위원회에서는 발굴조사의 공정성 침해 여부 심사 시 이미 주어진 출자관계 이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
- 행정처분의 불허(거부) 통보 시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지 않는 것은 위법사항
- 행정청의 처분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 법령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이는 처분의 정당성 확보와 이해관계자의 신뢰보호 및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행정절차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 상피제도 : 조사기관과 사업시행자 간 출자 등 관계가 있어 조사의 공정성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 여부 결정(시행령 제8조 제1항)

다. 현황 및 문제점

- 종전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조사기관과 사업시행자 간 출자관계가 있으면 발굴허가 불허(80%)
- 객관적인 판단기준 부재로 일관성 있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피제도 관련 행정의 예측 곤란(문화재위원회 구성에 따라 관점 차이 큼 ⇒ 민원 야기 원인 작용)

라. 상피제도 운영 개선(안)

1) 기본 방침

- 상피제도의 적용대상과 판단기준을 세분화·구체화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객관성 확보
- 판단기준에 부합될 경우 발굴허가 하고 “전문가 검토회의”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조사의 품질과 공정성 확보

2) 운영 개선(안)

가) 적용대상(범위) : 문화재위원회 심의 대상

-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 사이에 ‘출자·인사·예산’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에 해당되면 문화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함

① 설립 시 출자관계(지자체 관련) : 현행과 동일

조사기관	적용대상 및 범위	비 고
광역 지자체(시·도) 출자기관(소속기관 포함)	· 해당 광역 지자체(시·도) 발주 공사 · 해당 광역 지자체 출자기관 발주 공사	기초 지자체(시·군·구) 발주공사 제외
기초 지자체(시·군·구) 출자기관(소속기관 포함)	· 해당 기초 지자체 발주공사 · 해당 기초 지자체 출자기관 발주공사	광역 지자체(시·도) 발주공사 제외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공동 출자기관(발전연구원)	· 해당 광역 지자체/기초 지자체 발주 공사 · 해당 광역·기초 지자체 출자기관 발주공사	광역·기초 발주 모두 적용

② 인사 관계

조사기관	적용대상 및 범위	비 고
당해 발굴조사기관	· 임원(이사장, 이사, 원장) 중 1인 이상을 사업시행자가 임면하는 경우 · 임원 중 1인 이상이 사업시행자와 친·인척 등의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법상 임명권 외에 실제 임명권을 행사한 경우도 해당

③ 예산 관계

조사기관	적용대상 및 범위	비 고
당해 발굴조사기관	· 사업시행자가 조사기관에 당해 연도 예산을 지원한 경우(인건비, 사업비)	법상 관리감독 관계가 아니어도 실제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나) 판단(검토) 기준 :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검토기준

구 분	판단(검토) 기준	비 고
발굴조사계획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계획서 구성 및 내용의 구체성, 객관성 · 조사기간의 적절성 / 조사방법의 타당성 · 조사절차의 적정성 	조사 계획의 적합성 검토
이전의 공정성 침해 유사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사업시행자 발주의 발굴조사와 관련 과거에 부실조사로 문책 받았거나 부실 조사로 인정된 사례 	부실 사례
발굴조사 참여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의계약에 의해 조사기관이 선정되었거나 대규모 사업부지 발굴을 1개 기관 단독으로 참여함으로써 공정성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사 참여 방식

다) 상피제도 적용 제외대상

- ① 유적의 보존 및 정비 사업에 따른 발굴조사
 - 국고보조사업 등에 의한 유적 정비 사업 발굴조사
- ② 학술조사 목적의 발굴조사
 - 국가 또는 지자체, 조사기관 자체 학술조사 차원의 발굴조사

마. 상피제도 관련 업무처리 절차

1) 문화재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 담당자 검토단계에서 사업시행자(조사기관)로부터 상피제도 적용과 관련한 의견 및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위원회 상정
- 발굴허가 신청(상피제도 관련 의견서 등 첨부) → 담당자 검토 → 위원회 상정 심의 → 발굴허가 여부 결정 및 통보

※ 담당자 검토 : 출자관계, 조사기간·방법·절차 등 사전 검토

※ 발굴허가 시에는 ‘전문가 검토회의’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 철저 시행

2) 상피제도 제외 대상(심의 제외)인 경우

- 일반적 발굴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
- 필요 시 ‘학술자문회의’ 또는 ‘전문가 검토회의’ 등 개최토록 함

바. 향후 계획

- 상피제도 운영 개선(안) 확정 후 시행(7월~)

사. 의결사항

- 보류
- 보류 8명 / 출석 8명

Ⅲ. 보고사항

1.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발굴조사 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고도지정지구내의 신라왕경핵심유적 8개소에 대한 정비·복원을 위해 발굴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중요사적지에 대한 발굴조사 사업으로 진행과 관련, 매장문화재분과위 보고 필요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신라왕경사업추진단장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월성, 동궁과 월지, 황룡사, 월정교, 쪽샘지구 등 8개 유적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월성동, 황남동, 인왕동 등 경주고도지정지구 일원
 - 지 정 일 : 1968 .7. 24. (유적별 상이)
 - 대상면적 : 989,810m²
- (3) 사업내용
 - 경주 월성 내부 및 성벽 발굴조사
 - ‘동궁과 월지’ 경역확인을 위한 동·서 지구 발굴조사
 - 황룡사 남편 광장조성 부지 및 구)조사단 사무실 부지 조사
 - 신라방리 복원 예정부지 발굴조사
 - 쪽샘지구 신라고분 및 일제강점기 조사 대형고분 재발굴
 - 월정교 남문루 주변 발굴조사
 - 첨성대 주변정비를 위한 발굴조사

라. 참고사항

- (1) 추진경과
 - ‘14. 7. 30. :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자문위원 위촉 및 제1차 자문회의
 - ‘14. 10. 15. : 신라왕경 발굴관련 주요현안 제1차 소위원회 보고

- 신라왕경핵심유적 발굴조사 추진계획안 및 '월성' 발굴조사방안 검토
- '14. 10. 17. : '월성' 발굴조사 문화재위원회 심의
- '14. 10. 21. : '월성' 발굴조사 허가 심의완료 (문화재청)
- '14. 11. 4. :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제2차 자문회의
- '14. 12. 4. : 신라왕경핵심유적 발굴조사 추진계획 청장보고
- '14. 12. 11.~12. : '월성' 발굴 계획관련 기자 브리핑 및 고유제 개최
- '15. 3. 18. : 월성 시굴조사결과 언론공개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15. 4. 2. : 월성 정밀발굴조사 변경허가 (문화재청)
- 15. 2. 11. 제2차 사적분과위 사업심의
 - 신라왕경사업은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심의완료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원안접수 8명 / 출석 8명

2. 보존조치 유적 재평가 소위원회 구성·운영 보고

가. 보고사항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제6조에 따라 「보존조치 유적 재평가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형 보존 또는 이전복원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 동법 제정 이전(1981~2011. 2월), 법령에 근거 없이 보존조치된 유적에 대하여 그 가치를 재평가 하여 법적 보호가 필요한 유적을 선별하고 관리단체를 지정하고자 함

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 운영기간 : 2015. 7. 6.~2017. 4. 30.
- (2) 위원구성
 - 재평가 대상 유적 성격에 따라 문화재위원(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
- (3) 처리대상 안건
 - 재평가 대상 유적 보존가치 심의 및 관리단체 지정
- (4) 개최시기: 1회~2회 / 년
 - 심의 대상 안건 확정 후 개최일정 조정
- (5) 조치사항
 - 소위원회 결과 및 행정조치 사항을 문화재위원회(매장문화재분과)에 보고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원안접수 8명 / 출석 8명

3. 발견매장문화재 평가심의 소위원회 구성·운영 보고

가. 보고사항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제6조에 따라 「발견매장문화재 평가심의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 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발견매장문화재 평가심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평가액 산정 및 보상금의 지급가액, 포상금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함

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 운영기간 : 2015. 7. 6.~2017. 4. 30.
- (2) 위원구성
 - 발견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문화재위원(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
- (3) 처리대상 안건
 - 발견문화재 보·포상금 지급액 및 국가귀속 심의 등
- (4) 개최시기: 1회~2회 / 년
 - 심의 대상 안건 확정 후 개최일정 조정
- (5) 조치사항
 - 소위원회 결과 및 행정조치 사항을 문화재위원회(매장문화재분과)에 보고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원안접수 8명 / 출석 8명

4.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내 발굴허가 현황 보고

가. 보고사항

「문화재보호법」의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 내 발굴조사허가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국가 또는 시·도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과 고도의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 내에서 발굴조사 허가를 신청한 사항 중 조사기관 변경이 없는 연차발굴조사와 7일 이내의 소규모 발굴조사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 2014년도 제5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요청사항

다. 유적목록

문화재명 (유적명)	지정현황	신청사유	조사기관	면적 (㎡)	조사 유형	조사 기간	허가 일
단양적성 북문 일원 보수구간 서벽	사적 제265호	보수정비 관련 기초자료 확보	(재)한성문화재 연구원	1,000	시굴	5	6. 1.
청도 읍성 서쪽 성벽 치성 및 각루 유적	경상북도 기념물 103호	연차 보수(복원)정비 계획에 따른 5차 발굴조사	(재)경북문화재 연구원	1,368	발굴	93	6. 1.
증평 추성산성(제6차)	사적 제527호	연차발굴을 통해 향후 정비 기초자료 확보	(재)충원문화재 연구원	3,742	발굴	77	6. 4.
원주 영원산성 3차 발굴	사적 제447호	산성 정비 및 복원	강원고고문화연 구원	2,350	발굴	90	6. 15.
안산읍성 및 관아지 5차	사적 제127호	학술발굴조사 및 보존대책수립	한양대학교박물 관	5,610	발굴	81	6. 17.
보령 충청수영성 내부 내아지	사적 제501호	시굴 후 발굴을 통해 향후 정비기초자료 확보	가경고고학 연구소	3,780	발굴	45	6. 22.
김제 벽골제	사적 제111호	연차발굴을 통해 향후 정비기초자료 확보	(재)전북문화 재연구원	5,130㎡	발굴	101	6.22.
서천 봉선리유적	사적 제473호	시굴 후 발굴을 통해 향후 정비기초자료 확보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4,116	발굴	42	6. 23.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원안접수 8명 / 출석 8명